# 서울시립대학교 『서울法學』
# 원고작성 및 논문투고요령

## □ 논문의 제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서울法學』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간예정일 2개월 전까지(논문투고 공고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여, 법학연구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https://lriuos.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지정토론 또는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논의를 반영하고,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하여 『서울法學』 발간예정일 2개월 전까지(논문투고 공고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https://lriuos.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논문에서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 투고논문은 『서울法學』의 '논문게재신청서'와 '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 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 논문 투고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 논문 투고자는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아니되고, 수정 및 재구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AI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 각주 또는 참고문헌에 AI 도구 활용 내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 원고의 작성

○ 제출하는 논문의 원고파일은 ㈜한글과컴퓨터의 "아래한글(흔글)"(*.hwp)로 작성하되, 한글(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한문혼용 또는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로 작성할 수 있다.

○ 논문의 분량은 도표, 사진,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조판 면수 33면 내외로 한다.

○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호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1. 편집용지 설정(F7) : 폭 153㎜ × 길이 225㎜
2. 용지여백 설정(F7) : 위 23, 머리말 12, 왼쪽 22, 오른쪽 22, 아래 10, 꼬릿말 10.
3. 글자모양 설정(Alt+L) : 글꼴 휴먼명조, 크기 10.3, 장평 95, 자간 −10.
   (각주: 글꼴 휴먼명조, 크기 9, 장평 95, 자간 −10)
4. 문단모양 설정(Alt+T) : 줄간격 180, 왼・오른 여백 0, 문단 위・아래 0, 정렬방식 혼합.

(각주: 줄간격 135, 내어쓰기 13.1)

○ 논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구성한다.

1. 제목
2. 저자명, 소속
3. 국문초록
4. 국문 주제어(5단어 내외)
5. 목차
6. 본문
7. 참고문헌
8. 외국어 초록
9. 외국어 주제어(5단어 내외)
10. 부록(필요한 경우)

○ 2인 이상의 저자에 의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 등을 논문게재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 ○ 본문의 구성

○ 본문에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성명, 소속, 졸고 등)을 삭제해야 한다.

○ 도표는 그 상단에 표제를 쓰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단에 기재한다.

○ 그림은 표제 및 설명을 그 하단에 기재한다.

○ 본문 내 목차의 순서는 "I.", "1.", "1)"의 순서로 하되, 그 아래의 목차번호는 저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처음 인용할 경우에 각주는 가능한 한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민법(제10판)』, 박영사, 2010, 222면.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제○○권 제○호, 출판년도, 면수.
   예> 홍길동, "법에 관한 연구", 「법철학이해」 제1권 제1호, 2010, 138면.
3.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선생 ○○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법에 관한 연구", 홍판서선생회갑기념논문집, 「과거와 현행법에 대한 이해」, 박영사, 2010, 123면.
4. 판결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인용방식에 준하여 표시한다.
   판결 : 대법원 ○○○○. ○○. ○○. 선고 ○○누○○ 판결
   결정 : 대법원 ○○○○. ○○. ○○. 선고 ○○두○○ 결정
   헌법재판소 ○○○○. ○○. ○○. 선고 ○○헌가○○ 결정
5.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6. 외국판결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7. AI 활용 부분 : AI 도구회사, 연도, AI 도구 이름(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자료유형(대형언어모델(LLM), 소프트웨어(SPSS, MATLAB등 통계나 수치

분석 동구 등)], URL, 활용방법.

○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각주에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저서 : 저자명, 앞의 책(또는 전게서), 면수.
2. 논문 : 저자명, 앞의 논문(또는 전게논문), 면수.

### ○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정리한다.

1.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구분한다.
2. 국내문헌은 저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발행연도의 순으로 정리한다.
3.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
4. 논문 작성시 AI 도구로 생성한 문장 및 자료 등을 사용한 경우 AI 도구회사, 연도, AI 도구 이름(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자료유형(대형언어모델(LLM), 소프트웨어(SPSS, MATLAB등 통계나 수치분석 동구 등)], URL, 활용방법의 순으로 정리한다.

### ○ 초록 및 주제어

○ 초록 및 주제어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작성한다.

1. 게재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국문 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를 작성한다.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알파벳이 들어가는 외국어로 작성하되 1면 이상 2면 이내로 작성한다.
2. 게재원고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 및 국문 초록과 국문 주제어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 기타

○ 『서울法學』에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필자에게 반송된다.

○ 『서울法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논문사용권 위임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법학연구소가 이를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서울法學』에 게재 확정된 논문 필자에게는 『서울法學』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